

전주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나90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나904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가단113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표

변론종결 2023. 3. 8.

판결선고 2023. 4. 5.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가단1130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 4. 4. 접수 제352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고령이고 이 사건 주택에 이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나,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C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C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바 없어 이 사건 주택을 C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여되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고, 그 처분행위는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0551 판결 참조). 한편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이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해당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82913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뿐 아니라 증여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도 있는 모자관계에 있다는 점,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설민수, 판사 고연금

별지